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93 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김미애·백종헌·최형두

조승환 · 서지영 · 박수영

이인선 · 김예지 · 안상훈

한지아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, 실태조사 실시,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, 교육·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또한 등록통계사업이 확대되어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 외에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 생하게 될 수 있음.

예를 들어,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나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현재 수

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'치료 부작용'이나 '예후'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기관 내에서 별도로 자료를 수집·취합하여야 함.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고,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.

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8조 및 제20조).

법률 제 호
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과 의료기기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의약품을"을 "의약품 및 의료기기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 및 의료기기"로 한다.

제2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8조(<u>의약품</u> 생산 및 판매 지 | 제18조(<u>의약품과 의료기기</u> 생산 | | |
| 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| 및 판매 지원 등) ① | | |
| 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| | | |
| 를 위한 <u>의약품을</u> 생산하거나 | 의약품 <u>및</u> | | |
|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| <u>의료기기를</u> | | |
|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| | | |
| 있다. | | | |
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 | ② | | |
| 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 | | | |
|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의약</u> | 의약 | | |
| <u>품</u> 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 | <u>품 및 의료기기</u> | | |
| 법」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| | | |
|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 | | | |
| 원을 할 수 있다. | | | |
| | | |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 | |
| 제20조(비용의 보조) 국가와 지방 | 제20조(비용의 보조) | | |
| 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 | | | |
| 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 | | | |
|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| | | |
| 다. | | | |
| 1. ~ 6. (생 략)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| | |
| <u><신 설></u> | 7.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 | | |

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